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7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최실적이 저조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최근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는 포함하는 한편, 조문에 남아 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잘못된 표현 등을 시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자문위원회의 참여 범위 확장 (안 제1조)
- 나. 개최실적 저조한 위원회 삭제, 최근 설치 위원회 포함 (안 제2조)
- 다.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 (안 제4조)
- 라. 잘못된 표기는 바로 잡고, 따로 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없애 간결하게 하며, 일본식 표현, 불필요한 한자어, 잘못된 피동표현, 어색한 조사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안 제3조,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7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지원과 협의 완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1. 9.8. ~ 9.28.)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교육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별첨 4)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권고의견을 부분수용함 (별첨 6)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로,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에서 설치된 위원회” 를 “위원회” 로,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를 “사항을” 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으로, “위원으로” 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해 설치되는” 을 “따라 설치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위원” 을 “시의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를 “위원장

과 부위원장은” 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제2항제1호 중 “요구가 있” 을 “요구하”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이상의 요구가 있” 을 “1 이상이 요구하”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회의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을 “그 밖에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을 “운영을 위하여” 로, “담당 공무원이 된다” 를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자문과 관련하여 누락되는” 을 “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빠뜨리는”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에게는” 을 “위원에게”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u>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u>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u>관한 사항을 규정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u> ----- ----- ----- <u>필요한 사항을 정함</u>----- -----.</p>
<p>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2. (생략)</p> <p>3. <u>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u></p> <p>4. ~ 20. (생략)</p> <p>21. 삭제</p> <p>22. <u>사학정책자문위원회</u></p> <p>23.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2조(설치)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4. ~ 20.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23. (현행과 같음)</p> <p>24. <u>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u>제2조에서 설치된 위원회</u>는 다음 각 호의 <u>사항에 관하여</u> 교육감에게 자문한다.</p> <p>1. ~ 4. (생략)</p>	<p>제3조(기능) <u>위원회</u>----- ----- <u>사항을</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장을</u>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p>	<p>제4조(구성) ① -----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u>----- <u>위원으로</u></p>

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하고 각 호에 열거된 자 중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③ (생략)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생략)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요구가 있는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
-. ----- 따라 설치하는 -----.

② -----
---- 사람 -----.

-----.

1. (현행과 같음)
2. -----
사람
3. ----- 시의원
4. 그 밖에 -----
사람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요구하-----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③ (생략)

④ 기타 회의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
원회 소속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
다.

② 간사는 정책자문과 관련하여 누
락되는 분야가 없도록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
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
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2. ----- 1 이상이 요구하---

3.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은 -----.

제9조 (간사) ① ----- 운영을 위하여

-----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② ----- 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빠뜨
리는 -----
-----.

제11조(수당 등) ① ----- 위
원에게 -----
-----.

② (현행과 같음)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주요내용) 개최실적이 저조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최근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는 포함하는 한편, 조문에 남아 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잘못된 표현 등을 시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꿈.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교육행정6급 신지은 (02-3999-310)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예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제출의견 없음 ”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기철민
입안주관부서	정책안전기획관	통보일	2021.9.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자문위원회를 신설·폐지하여 재정비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시 양성의 관점에서 공정한 정책이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따른 특혜 발생의 여지가 없고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 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1A서울교육024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신지은	전화번호	02-399-3910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김소영	전화번호	02-399-3675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1년 09월 13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1년 09월 17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09월 18일</p>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	직급		성명	신지은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광민재,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정진권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문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정이니만큼, 학교구성원 당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를 명시적으로 신설하여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유의미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제안: 제8조의2(의견청취) 신설. 제8조의2(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일부 권고의견

자치법규(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부서 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정책·안전 기획관	담당자	소속	정책연구	직급	행정6급
			성명	신지은	전화번호	02-399-9310
소위원회 검토의견		수용여부	부서의견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문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정이나만큼, 학교구성원 당사자의 의견청취 의무를 명시적으로 신설하여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유의미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제안: 제8조의2(의견청취) 신설. 제8조의2(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교육 정책 입안, 계획 수립 등에 있어 교육감에게 자문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우리교육청은 이미 학생인권 조례 제20조에 따라 학생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 자문위 설치·운영 조례 제4조를 통해 내·외부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각 자문위 안건 작성 등의 사무 처리는 소속 부서에서 담당하므로 학교구성원 의견 청취 사무 처리 주체 역시 소속 부서로 귀결되는데, - 각 부서는 자문위 구성과 무관하게 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조문 신설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됨. - 조문 신설보다는 매년 정책·안전기획관에서 수립하는 정책자문위 운영 계획에 “필요 시 자문 안건 작성 전 학생,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담아 각 소관 부서에 안내(권고)하겠음. 			

【별첨 7】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양성평등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